

문 의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과 장 남영택 사무관 이태원	042-481-5182 042-481-5961
  공공누리 공공저작을 자유이용허락	2018년 5월 31일(목) 배포 즉시 보도 바랍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대상 확대”

- 청년창업자, 한 부모가족, 다문화가족 까지 지원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무료변리 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청년창업자 및 예비청년창업자, 한 부모가족, 다문화가족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발명진흥법 시행령’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신규 추가된 청년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한 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은 사회·경제적 지원이 절실하여 각각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한 부모가족 지원법,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의해 보호 받고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소기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학생, 영세발명가,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재산권 상담, 출원서류 작성지원, 심판·소송대리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센터 소속 12명의 변리사가 무료로 직접 지원하고 있다.

지난 해 심판·심결취소소송 직접대리 120건, 서류작성지원 383건, 상담 12,350건 등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라 지원 건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청년창업자, 한 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산업재산권 창출·보호 지원으로 산업재산권 분야에서 사회적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에 신규로 추가 되는 지원대상자가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정책 관련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등과의 업무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무료변리 지원을 희망하는 지원대상자는 한국 지식재산보호원(02-6006-4300)에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별첨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내용 및 대상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사무관 이태원(☎ 042-481-596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내용 및 대상

○ (지원내용) 심판·심결취소소송 직접대리, 서류작성지원, 산업재산권 상담 등

< 공익변리사 상담센터 세부 지원내용 >

구분	지원내용
심판·심결취소소송 대리지원	·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시 공익변리사가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 보호
민사소송비용 지원	·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사회적 약자가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대리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 행사를 지원
산업재산권 상담	· 센터를 방문한 방문자에 대한 상담은 물론 우편 및 FAX, 전화,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한 온라인 상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상담 실시
서류작성지원	· 사회적 약자의 발명 등이 등록요건을 구비한 경우,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되도록 관련서류를 작성

* 심판·심결취소소송 및 민사소송비용지원의 경우, ‘중소기업’ 및 ‘월수입 220만원 이하의 영세 개인발명가’ 포함. 단, 중소기업(중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분쟁 중인 기업만 해당

○ (지원대상) 소기업, 학생(특수대학원생 제외), 만6세이상~만19세 미만인 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특수임무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해당자, 등록장애인, 군복무중인 일반사병, 공익근무요원, 전투경찰대원, 의무소방대원 등 전환복무수행자, 한 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청년창업자 및 예비창업자